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3,966,245	10,318,987
일반회계	298,594,383	8,957,831
특별회계	45,371,862	1,361,156
공기업특별회계	13,255,094	397,6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55,094	397,653
기타특별회계	32,116,768	963,503
주택사업특별회계	20,010	600
의료보호특별회계	645,344	19,36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42,000	40,260
장학사업특별회계	7,992,204	239,7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61,645	64,849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53,164	28,595
수질개선특별회계	18,802,401	564,0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46,151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